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2000. 4.19  
교육사회위원회

##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0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3일
- 다. 상정일자 : 2000년 4월 19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심사의결

## 2. 제 안 설 명 요 지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 가. 제안이유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내용중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조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28명에서 5명를 감축하여 2,823명으로 함 (안 제2조)

##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김동윤)

-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제가 도입된 이 후 초·중등학교의 신설·폐지 등으로 시·도 교육청간의 행정수요에 있어서 현격한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상호 조정하기 위하여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기준 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762호) 이 2000년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

- 충청북도교육청의 총정원이 2,828명에서 2,823명으로 5명이 감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첨부서류

- 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로 한다.

제2조중 “2,828명”을 “2,823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2,815명”을 “2,810명”으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2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법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2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제2조제3호중 “법 제43조”를 “법 제36조”로 하고, 동조 제4호중 “법 제41조”를 “법 제34조”로 한다.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22조”를 “법 제17조”로 한다.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2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5.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로 하고,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3조중 “법 제41조”를 “법 제34조”로 한다.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동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별지1호서식중 “법 제2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25조”를 “법 제20조”로 하고, 동조 제3호중 “법 제43조”를 “법 제36조”로 한다.

제5조중 “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25조”를 “법 제20조”로 하고, 동조 제3호중 “법 제43호”를 “법 제36조”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u> 제13조, 제17조 제5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원의 총수)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828명</u>으로 그 내 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 청 소속기관 및 동립의 각급학교 : <u>2,815명</u></li> </ol>	<p>제1조(목적) ..... <u>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u> .....</p> <p>.....</p> <p>.....</p> <p>.....</p> <p>.....</p> <p>.....</p> <p>.....</p> <p>제2조(정원의 총수) ..... <u>2,823명</u>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u>2,810명</u></p>